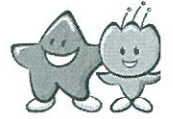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교습중지)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2018. 1. 18.(목) ~ 2018. 2. 2.(금) (16일간)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끝.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학원지도담당

체육평생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체육평생건강과-1393 (2018.01.18.) 접수 평생교육건강과-722 (2018. 1. 18.)
 우 2862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24번길 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http://www.cbcje.go.kr
 (산남동)
 전화번호 043-299-3032 /팩스번호 0 / hwaniz330@cbe.go.kr / 비공개(6)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교습중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하니 당사자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송달내용 :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2. 당 사 자 : 붙임문서 참조
3. 위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및 교습장소 변경 2차 미신고
4. 처분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1년)
5. 의견제출 기한 : 2018. 2. 2.(금) 까지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구두·정보통신망
 - 가. 담당자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원지도담당 주무관 김충환
 - 나.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산남동),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 다. 전 화 : 043-299-3031~3 (Fax.043-299-3059)
 - 라. 전자우편 : hwaniz330@cbe.go.kr
7. 유의사항 :
 - 가. 처분의 당사자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